

이사회 규정

2025. 4. 25

기아 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3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 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,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을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 성)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의 장)

- ① 정기주주총회 후 첫 회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.
- ② 정관 제35조의2 제2항의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. 단,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 이사 간의 호선으로 이사 중 그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. (개정 2021.01.27)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(개정 2019.10.24)

-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단,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개정 2019.10.24)
-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때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의 이사회 소집요구에 응한다.

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 소집통보는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,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10.24)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9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단,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른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,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 (부의사항)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상법상의 의결사항
 - ① 주주총회의 소집
 - ② 영업보고서의 승인

- ③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승인
- ④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⑤ 공동대표의 결정
- ⑥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⑦ 신주의 발행
- ⑧ 사채의 발행
- ⑨ 준비금의 자본전입
- ⑩ 전환사채, 교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⑪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- ⑫ 분기배당

(2)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

- ①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- ②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회사의 예산·결산
- ④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, 채무의 보증,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⑤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계획
- ⑥ 해외증권의 발행

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,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(개정 2021.01.27)

제12조 (긴급집행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제13조 (위 임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9.07.23)
- ② 아래 각 사항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한다.
(신설 2019.07.23, 개정 2021.07.22)

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
2. 「상법」 제542조의9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

제13조의2 (위원회)

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, 감사위원회,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. (개정 2016.03.18, 2019.10.24, 2021.07.22)

제13조의3 (삭제 2019.10.24)

제13조의4 (자문위원회)

이사회는 이사회 부의사항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의5 (자동차부문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

대표이사는 자동차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케팅, 연구개발, 자재, 생산기술, 정비 등의 기획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「자동차부문 기획위원회」와 동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할 부문별 기구를 별도로 둘 수 있다. (개정 2021.01.27)

제 13조의 6 (선임사외이사)

-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 1인을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선임사외이사의 임기는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로 한다.
-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, 사외이사 의견 수렴 및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전달
 2. 주주, 이사회, 경영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원
 3.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
- ④ 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제 3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(개정 2025.04.25)

제14조 (경영진)

- ① 정관 제35조의4에 의거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.
- ②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21.01.27)
- ③ 경영진은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로 구분하며 회장, 부회장, 사장은

최고경영자라 칭하고 경영진은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. (개정 2019.10.24)

- 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. (개정 2021.01.27)
- ⑤ 각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, 연임 될 수 있다.
- ⑥ 경영진의 급여 및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경비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21.01.27)
- ⑦ 회사의 설립과 경영,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21.01.27)
- ⑧ 경영진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.

제15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)

-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경우,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 (이사의 직무)

- ①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유지하며,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.
-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

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18조 (이사회 지원)

회사는 이사회의 소집과 의안 제안 등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또는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 (개정 2019.10.24)

제18조의2 (사외이사 지원) (신설 2019.07.23)

사외이사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.

제19조 (규정개정)

- ① 이사는 이사회 규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② 제안된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심의하며 전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③ 개정안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이사회에서 결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2025년 4월 25일

기아 주식회사

첨부 1-1. 대표이사 위임사항

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다.

I. 차입 및 보증

1. 건별 자기자본의 20% 미만의 차입
2. 금융 및 외환거래와 관련한 제반 약정체결 및 연장
3.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 관련한 소요자금의 기채 및 지급보증
4. 건별 미화 2억불 미만의 해외자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,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
(단,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대상이 아닌 것에 한함)
5. LOCAL L/C 개설한도 설정
6. 기승인 또는 위임받은 차입계약과 관련된 자산 담보제공
7. 기존 차입 및 보증에 대한 기간 연장

II. 투자 및 주식취득·처분

1. 건별 자본총계의 2.5% 미만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증자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
2. 투자예산 승인내의 신제품 개발투자
3. 건별 자본총계의 2.5% 미만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
4. 투자목적의 유가증권(채권, 주식 등) 취득 및 처분
5. 건별 자본총계의 2.5% 미만의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

III. 기 타

1. 건별 300억원 미만의 거래처에 대한 자금대여 및 전도
2. 주요 거래처와의 판매협정서 체결 또는 개정(중요사항 이사회 상정)
3.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정
4. 대표이사 위임사항의 업무분장 집행
5. 기타 상법,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회사 일상업무에 관련된 사항
6.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대규모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미만의 사항
(개정 2024.07.26)